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회 소속 변경, 국민인식 및 행정역량 제고 등〉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04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                          | 1 |
| III. 주요내용 .....                         | 2 |
| IV. 검토의견 .....                          | 3 |
| 1.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소속 변경(대통령→국무총리) 등 ..... | 3 |
| 2.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민 인식 제고 및 행정 역량 강화 .....  | 8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12. 16.
3. 회 부 일 : 2025. 12. 17.

## II. 제안이유

2015년 제70차 UN 총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인류 공동이 달성해야 할 의제로 제시함.

우리나라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법으로 격상하였고 2024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나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에 각각 두고 있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유엔이 평가하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성취도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특히 국민의 지속가능발전 인식도가 50%

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 참여·실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이에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대한 국민, 공직자, 지자체의 참여와 실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을 운영하고 우수한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공무원 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Ⅲ.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우수시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조항을 신설함  
(안 제15조).

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17조).

다. 국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촉위원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안 제18조).

라. 국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IV. 검토의견

##### 1.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소속 변경(대통령→국무총리) 등

- 개정안은 ① 현재 대통령 소속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② 그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며,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u>대통령 소속</u> 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u>국무총리 소속</u> 으로 둔다.       |
|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대통령이 위촉한다</u> . |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무총리가 위촉한다</u> . |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u>대통령이 위촉한다</u> .                                                                                                                             | ③ <u>국무총리가 위촉한다</u> .                              |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                                                                                                                         | ④ <u>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u> .         |
| <신설>                                                                                                                                                           | 제1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현행 | 개정안                                                                                                                                                                                                                                                                                                                                                                                                                                                                                                                                                                                   |
|----|---------------------------------------------------------------------------------------------------------------------------------------------------------------------------------------------------------------------------------------------------------------------------------------------------------------------------------------------------------------------------------------------------------------------------------------------------------------------------------------------------------------------------------------------------------------------------------------|
|    | <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p>3. <u>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p> <p>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p> <p>② <u>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③ <u>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p> |

□ 현행법 제17조<sup>1)</sup> 및 제18조<sup>2)</sup>는 대통령 자문 및 정책 심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이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동 위원회의 사무지원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업무는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이 담당하게 됨.

참고로, 2026년 1월 기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총 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구성 현황(2026년 1월 기준)>

| 위원회 구성 현황      |                                                                                                                                | 위원장                     |
|----------------|--------------------------------------------------------------------------------------------------------------------------------|-------------------------|
| 정부위원<br>(총12명) | · <b>당연직</b> (12명,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데이터처장) | 위촉위원<br>중<br>대통령이<br>위촉 |
| 민간위원<br>(총43명) | · <b>당연직</b> (17명, 17개 시·도 지방위원장)<br>· <b>위촉직</b> (26명)                                                                        |                         |

(자료: 국무조정실)

-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과 직원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 개정안은 ① 현재 대통령 소속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사무지원을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 위원회 소속 변경에 맞추어 위원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②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최대 2년+2년)로 제한함으로써 동 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법률로 규정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 구 분      | 현 행 법   | 개 정 안          |
|----------|---------|----------------|
| 위원회 소속   | 대통령     | 국무총리           |
| 위촉권자     | 대통령     | 국무총리           |
| 연임제한     | 연임제한 없음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 제척·기피·회피 | -       |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 국무조정실은 위원회 소속 변경(대통령→국무총리)과 관련해, 현재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나, 동 위원회 사무지원을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법률 개정과 함께 이미 두차례 그 소속이 변경(대통령 소속 → 환경부장관 소속 → 대통령 소속)<sup>3)</sup>되었으므로, 동 개정안에 따라 다시 소속이 변경될 경우 조직 안정성 측면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 제17조<sup>4)</sup>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자문’ 등으로 수정해야 할 것임.

둘째, 개정안을 따를 경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위촉권자가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되는데, 기존에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sup>5)</sup>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부칙에서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sup>6)</sup>

---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08. 2.시행)」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었고, 「지속가능발전법(2010. 4. 시행)」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이었으며, 2022년 7월 시행된 현행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5) 현재 재임 중인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임.

6) <부칙 조문 예시>

제○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고,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2.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민 인식 제고 및 행정 역량 강화

□ 개정안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우수 시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조 제4항 신설), ②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며(안 제22조제2항 신설), ③ 지속가능발전 홍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 ③ (생략)<br><u>&lt;신설&gt;</u>                                                                                                     |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br><u>④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우수 시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
|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생략)<br><u>&lt;신설&gt;</u>                                                                                                                |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br><u>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br><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
|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 ③ (생략)<br>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u>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u>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br>-----<br>-----<br>-- <u>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u><br><u>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u> -----<br>-----. |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2년 단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sup>7)</sup>,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sup>8)</sup>을 지정하며<sup>9)</sup>,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육 및 홍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sup>10)</sup>

□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연구조사<sup>11)</sup>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지도는 57.6%에 불과하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인지하지 못함’의 비율이 4.9%로 나타나, 국민과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식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8) <2025년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지정 현황>

| 합 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
|------|--------|--------|------|
|      |        | 광역     | 기초   |
| 291명 | 48명    | 17명    | 226명 |

(자료: 국무조정실)

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 국무조정실, 2025, p.11, p.430

□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주간을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우수시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가능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15조제4항은 “지속가능발전 우수 시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우수 시책’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인지 또는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 지원하려는 것인지 문맥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입법 취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sup>12)</sup>

|              |
|--------------|
| 문 의 처        |
| 02)6788-5113 |

12)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입법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